

임직원 각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를 위한 \*\*\*대응 방침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나 2월 25일에 일본 정부로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 방침(별첨)이 발행된 것을 받아, 당사로서의 대응 방침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본 방침에 기초한 대응은 3월 말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단축 또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 1. 해외 관계회사의 대응

(1) \*\*\*\*

가. 주재원

현재, 재택 근무 또는 가장 가까운 사업소에서의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으로 재입국에 대해서, 현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이르는 단계에서, 인사 담당 임원이 결정합니다.

나. 현지 스태프

- 필요 최소한의 인원은 출근(당번제)하고, 그 이외의 임원은 자택 근무를 계속해주시오.
- 중국 국내로의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장(기업장)의 승인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2) \*\*\*\* 이외의 관계회사·병합회사

가. 주재원·현지 스태프

현지, 관장 본부와 협의하여, 개별로 판단해주시오(별도 「관」에도 보고).

## 2. 해외 출장

(1) 출장 규제에 대해서

- 중국 전토(홍콩·마카오 포함) : 출장 금지(현행 취급을 계속)
- 한국(대구 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 : 출장 금지(이번 회 새롭게 추가)  
이후의 상황에 따라 규제를 한국 전토로 확대할 수 있음.
- 기타 각국 : 꼭 필요한 출장이 아니라면 자제할 것(이번 회 새롭게 추가)
- 중국이나 한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대체 루트를 검토할 것

(2) 출장규제국(중국·한국(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으로의 출장에 대해서

출장에 대해서, 거래처 등에서 강한 요망이 있던 경우는, 우선은 출장 회피할 수 없는지 조정해주시오. 그래도 더욱, 개별 안건 대응상, 출장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각 BU·부문장과 인사 담당 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업)」 「관」에도 보고할 것).

또, 출장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 거래처에서 방역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것

나. 출장자는 지역 정부 및 각종 시설의 방역 룰을 엄수할 것

다. 귀국 후, 1일간 자택 등에서 대기하고, 건강 상태에 문제없다면 출근 가능(현행대로)

라. 위와 관계없이 중증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질환(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등)df 가진 자나 고령자, 임산부는 출장시키지 않을 것

(3) 한국(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출장하는 직원의 취급

귀국 후, 14일간은, 자택 근무 또는 자택 등에서 대기하고, 관찰 기간을 지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출근 가능으로 합니다.

(관찰 기간 중 자택 대기한 경우의 근태는 39:기타 유급휴가(임금 100%)를 사용해주십시오.)

(4) 기타 유의사항

세계 각국에 있어서, 입국 제한이나 입국 후의 행동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예:대만에서는, 일본을 감염증 레벨 2로 하고, 매일 체온이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각국의 대응책은 지극히 유동적이며, 해외로 출장갈 때에는, 각국 당국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 외에도, 수도 주재 대사관에 확인하는 등, 최신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해주십시오. 또, 해외 사무소·현지 법인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해당 사무소와도 연락을 취해, 최신 정보의 입수에 노력해주십시오.

· 각국에 있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입국제한 조치와 입국후의 행동제한 조치에 관한 상황

<https://www.anzen.mofa.go.jp/covid19/pdfhistory...world.html>

·재외 공관 리스트

<https://www.mofa.go.jp/mofaj/annai/zaigai/list/>

### 3. 사내 운용방침

감염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당사로서 이하의 방침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대규모 회의·연수·각종 회합(식사 포함)·출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연수·회의·각종 회합(주1)은, 원칙 중지 혹은 연기해주십시오.

개최가 필수인 경우는, TV회의로 실시하거나, 참가 인원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체 수단도 함께 검토해주십시오.

(주1)사외나 사내의 다른 사업소에서 대략 30명 이상이 참가하는 회의·연수를 대상으로 함.

·국내외, 원·근거리를 묻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출장은 삼가하고, TV회의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해주십시오.

(2) 현장 운용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아래에 적는 재택 근무나 시차 근무도 함께 각 징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주십시오.

#### 가. 재택 근무

- 대상자는 사무직 전원(자격은 묻지 않음)으로 하고, 현행 제도상 원칙 주 1회로 하고 있는 횟수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합니다.
- 기타 재택 근무의 이용에 있어선 「재택근무에 관한 취급 기준」, 각 부문에서 정한 직장 운용 요령에 따라주십시오.

#### 나. 시차 근무

-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있는 사업소에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통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혼잡 시간대를 피한 시차 근무를 권장합니다. (재량노동제나 플렉스 타임제 적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활용)
- 교대로 시간을 변경하는 등, 업무상 지장이 없도록, 각 부문에서 운용해주십시오.

### **4. 감염확대 방지, 예방을 위해서(각자 주의해야 할 것)**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접촉 감염으로 옮겨진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에 있어선,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자기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자주 손을 씻고(손가락·손톱·손등 등)·가글·알코올 소독을 해주십시오.
- 출근시나 식사 전에는 손 씻기(알코올 소독)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 매일의 몸상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체력이 떨어지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 가능한 한 사람이 모인 곳은 피함과 동시에,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기침 에티켓을 지켜주십시오.
- 마스크는 회사의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각자 가지고 가서 처분해주십시오.

### **5. 사내에 감염증 이환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의 대응**

#### (1) 본인이 증상이 발현한 경우

- 행정지시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출근 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대기해주십시오.

(대기기간 중의 근태는 39:기타 유급휴가(임금 100%)를 사용해주십시오.)

- 행정지시에 따라, 밀접 접촉자의 특정이나 소독 작업을 실시합니다.

#### (2)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가. 감염자와의 접촉이 명확한 경우(밀접 접촉자)

행정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14일간 재택 근무 또는 자택 등에서의 대기로 해주십시오.

(관찰 기간 중에 자택 대기한 경우의 근태는 39:기타 유급휴가(임금 100%)를 사용해주십시오.)

##### 나. 감염자와의 접촉은 확인할 수 없으나,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발열 등의 감기의 증상이 보이는 경우는, 증상이 나올 때까지 출근을 삼가하고, 재택 근무의 활용 혹은 자택 요양(연차 유급휴가처리)으로 해주십시오.

-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우선은 가장 가까운 보건소 등에 설치된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주2)에 상담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주십시오. 감염에 대한 불안에서 동 센터에 상담 없이 의료 기관에 진단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감염될 리스크를 높이게 됩니다.

- 증상이 아래(주2)의 기간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로 인플루엔자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통상과 마찬가지로 주치의 등에 상담해주시요.

(주2) 「귀국자·접촉자 상담 센터」에 상담하는 기준

- A. 감기 증상이나 37.5°C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
- B. 강한 탈력감(권태감)이나 숨쉬기가 힘든 증상(호흡 곤란)이 있음.
- C. 고령자나 기초 질환 등이 있는 분은, A 또는 B의 상태가 2일 정도 계속되는 경우

## 6. 기타

- 장내 외주 직원, 파견 직원에 대해서도 외주처나 파견회사와 조정하여, 가능하면 직원에게 그에 준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영업·조달 대응 등에 대해서는, 영업기획부, 조달본부 등, 관계 부문에 상담하고, 그 지시에 따라주시요.
-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본 방침에 준하여, 각 회사의 실태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의문점이 있는 경우는, 「관」에 상담해주시요.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Q&A가 후생노동성 HP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해주시요.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cou\\_iryuu/dengue\\_fever\\_ga\\_00001.html](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cou_iryuu/dengue_fever_ga_00001.html)

(끝)

## 첨부물

- 정부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 방침 (2월 25일부)